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약정금

원 고 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[redacted]에 175,000,000원, 원고 [redacted]에 35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약정금(잔부판결)¹⁾

원 고 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는 [redacted]과 연대하여 원고 [redacted]에게 175,000,000원, 원고 [redacted]에게 35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